

-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른 - 식품접객업자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

근거	1.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2.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 (농식품부 고시 제2024-14호)				
목적	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·폐업 지원 ※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, 신고·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·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				
신고대상	개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음식점을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자 ※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·가공하여 판매하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				
신고기한	(신고서) ~ '24. 5. 7. / (이행계획서) ~ '24. 8. 5. ※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, 전·폐업 지원 불가				
신고절차	신고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신고서</td> <td>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서류현장조사(영등포구) → 신고확인증 발급(영등포구)</td> </tr> <tr> <td>이행계획서</td> <td>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검토·수리(영등포구) → 이행점검(영등포구)</td> </tr> </table>	신고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서류현장조사(영등포구) → 신고확인증 발급(영등포구)	이행계획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검토·수리(영등포구) → 이행점검(영등포구)
신고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서류현장조사(영등포구) → 신고확인증 발급(영등포구)				
이행계획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검토·수리(영등포구) → 이행점검(영등포구)				
제출내용	(신고서) 1.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(별지 제3호 서식), 2.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등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증빙자료</th> </tr> <tr> <td>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그 밖에 개고기 사용량,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(개고기 구입 업소명, 전화번호, 주소)</td> </tr> </table> ※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(이행계획서) 1.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 ※ 이행계획서 제출 후,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(2024.8 예정) 후 6개월 이내에 수정·보완하여 제출 가능	증빙자료	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그 밖에 개고기 사용량,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(개고기 구입 업소명, 전화번호, 주소)		
증빙자료					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그 밖에 개고기 사용량,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(개고기 구입 업소명, 전화번호, 주소)					
제출처	영등포구보건소 3층 원스톱위생민원실 / 영등포구 당산로 123(당산동3가)				
문의사항	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(☎ 02-2670-4734, 4716)				

-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른 -
유통업자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(즉석판매제조가공업)

근거	1.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2.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(농식품부 고시 제2024-14호)				
목적	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·폐업 지원 ※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, 신고·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·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				
신고대상	개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 중인 유통상인 ※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·판매하는 자				
신고기한	(신고서) ~ '24. 5. 7. / (이행계획서) ~ '24. 8. 5. ※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, 전·폐업 지원 불가				
신고절차	신고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신고서</td> <td>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서류현장조사(영등포구) → 신고확인증 발급(영등포구)</td> </tr> <tr> <td>이행계획서</td> <td>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검토·수리(영등포구) → 이행점검(영등포구)</td> </tr> </table>	신고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서류현장조사(영등포구) → 신고확인증 발급(영등포구)	이행계획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검토·수리(영등포구) → 이행점검(영등포구)
신고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서류현장조사(영등포구) → 신고확인증 발급(영등포구)				
이행계획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검토·수리(영등포구) → 이행점검(영등포구)				
제출내용	(신고서) 1. 개식용 도축·유통 운영신고서(별지 제2호 서식), 2. 증빙자료 등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h align="center">증빙자료</th> </tr> <tr> <td>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그 밖에 개고기 유통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(연 평균 거래량, kg당 판매가격)</td> </tr> </table> ※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(이행계획서) 1.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 ※ 이행계획서 제출 후,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(' 24.8 예정) 후 6개월 이내에 수정·보완하여 제출 가능	증빙자료	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그 밖에 개고기 유통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(연 평균 거래량, kg당 판매가격)		
증빙자료					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그 밖에 개고기 유통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(연 평균 거래량, kg당 판매가격)					
제출처	영등포구보건소 3층 원스톱위생민원실 / 영등포구 당산로 123(당산동3가)				
문의사항	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박성우 주무관 (☎ 02-2670-4726)				

-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른 -
유통업자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[좌판상인]

근거	1.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2.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 (농식품부 고시 제2024-14호)				
목적	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·폐업 지원 ※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, 신고·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·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				
신고대상	개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전통시장 내 좌판 매대에서 개를 유통·판매하는 자				
신고기한	(신고서) ~ '24. 5. 7. / (이행계획서) ~ '24. 8. 5. ※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, 전·폐업 지원 불가				
신고절차	신고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신고서</td> <td>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서류현장조사(영등포구) → 신고확인증 발급(영등포구)</td> </tr> <tr> <td>이행계획서</td> <td>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검토·수리(영등포구) → 이행점검(영등포구)</td> </tr> </table>	신고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서류현장조사(영등포구) → 신고확인증 발급(영등포구)	이행계획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검토·수리(영등포구) → 이행점검(영등포구)
신고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서류현장조사(영등포구) → 신고확인증 발급(영등포구)				
이행계획서	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검토·수리(영등포구) → 이행점검(영등포구)				
제출내용	(신고서) 1. 개식용 도축·유통 운영신고서(별지 제2호 서식), 2.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등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증빙자료</th> </tr> <tr> <td>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임대차계약서, 그 밖에 개고기 유통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(연 평균 거래량, kg당 판매가격)</td> </tr> </table> ※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(이행계획서) 1.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 ※ 이행계획서 제출 후,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(' 24.8 예정) 후 6개월 이내에 수정·보완하여 제출 가능	증빙자료	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임대차계약서, 그 밖에 개고기 유통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(연 평균 거래량, kg당 판매가격)		
증빙자료					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임대차계약서, 그 밖에 개고기 유통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(연 평균 거래량, kg당 판매가격)					
제출처	영등포구보건소 원스톱위생민원실 3층 / 영등포구 당산로 123(당산동3가)				
문의사항	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권지윤 주무관 (☎ 02-2670-3417)				